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6.

발의자 : 김정재 · 박성민 · 이현승
서일준 · 이달희 · 박충권
김기현 · 윤영석 · 유영하
박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,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 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,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.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.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 확성을 높이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· 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47조의4 신설).

나.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,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,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안 제47조의 5 및 제67조제6호의2).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7까지로 하고,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4(화물운송행정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“통합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63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제64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, 대폐차에 관한 사항,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활용하는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의5(종전의 제47조의4)의 제목 “(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

안대책)”을 “(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”을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”이라 한다)의 관리자는 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67조제6호의2 중 “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”을 “제47조의5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의3 중 “제47조의5”를 “제47조의6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2항제21호의2 중 “제47조의6”을 “제47조의7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47조의4(화물운송행정관련 정 보의 통합관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(이하 “통합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63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제64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, 대폐차에 관한 사항,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활용하는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.</u></p> <p><u>④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</u></p>

<p>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 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</p> <p>7. (생 략)</p> <p>제70조(과태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19. (생 략)</p> <p>20. · 21. 삭 제</p> <p>21의2. <u>제47조의6</u>에 따른 화물 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</p> <p>22. ~ 27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1의2. <u>제47조의7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p>22. ~ 2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/p>
---	---